고 소 장

고 소 인 김 민 혜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LEE & KIM**

변호사 김종천, 이선기

피고소인 김 원 욱

|  |
| --- |
|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상해죄로 먼저 고소한 사건이 여성청소년수사2팀 홍상남 수사관에게 배당되어 수사 중에 있으므로(귀서 2022-346) 위 수사관에게 본건을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홍상남 수사관)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김 민 혜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87 (연수동, 영흥타워)

(휴대전화 010-9236-8009)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LEE & KIM**

변호사 김종천, 이선기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현준솔로몬시티 501호

[전화:032-861-8100, 팩스: 032-861-8181]

피고소인 김 원 욱

주소불명

(휴대전화 010-6626-784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 하오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의 요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강간치상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21. 2. 28.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고소인의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바,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강간치상죄
   1. 강간
      1. 피고소인은 2021. 3. 27. 밤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50번길 87 소재 영흥타워 501호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던 중, 고소인이 통증을 느껴 “아프니까 그만하라’며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소인을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상위에서 고소인이 몸을 빼지 못하도록 힘을 가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하게 피스톤(삽입)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한 이후 고소인에게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수 차례 사과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과와 약속을 믿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1. 4. 24. 밤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고소인과 관계를 맺던 중, 위 (1)항 기재와 동일하게 고소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소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의 상위에서 고소인이 몸을 빼지 못하도록 힘을 가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하게 피스톤(삽입)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고소인을 간음하였습니다.

* 1. 상해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간음을 당한 후 복부 통증을 느껴 2021. 4. 3. ‘최대경여성의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급성 외음질염’의 진단을 받아 약 1주 치료를 받았습니다(증 제1호증 진단서).

이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재차 간음을 당한 후에도 심하게 복부 통증을 느껴 2021. 5. 1. ‘미래제일산부인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과 ‘미생물학적 이상소견 및 여성 급성 골반복막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성병검사(STD) 결과 ‘유레아플라즈마 및 가드네렐라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증 제2호증 진단서, 증 제3호증 STD 검사결과 보고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교제 이전에 위와 같은 성 관련 세균에 감염되어 치료 받은 사실이 없는바(증 제4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그렇다면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세균성 염증 질환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1.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수일을 요하는 “세균 감염 염증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헤어졌고 피고소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간헐적으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불안, 불면 등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겪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증 제6호증 확인서),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 놓고 상의한 끝에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수일을 요하는 “세균 감염 염증 질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강간치상), 피고소인을 엄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진단서

1. 증 제2호증 진단서

1. 증 제3호증 STD 검사결과 보고서

1. 증 제4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증 제5호증 문자메시지

1. 증 제6호증 확인서

2022. 1.

고소인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LEE & KIM

변호사 김 종 천

변호사 이 선 기

인천 연수경찰서 귀중